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52호 2011. 10. 5. (수)

## 【훈 령】

- 정선군훈령 제39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1

##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106호 2011.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
- 정선군고시 제2011-110호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3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536호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정선군공고 제2011-538호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훈 령**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9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훈령 제39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4-1,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1-106호

**2011.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11.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과 주택 신축등이 발생한 개별 주택에 대하여 2011. 6. 1기준으로 한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1. 9. 30.

정 선 군 수

1. 2011.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용

가. 공시기준일 : 2011. 6. 1기준

나. 대상주택 : 2011.1.1~5.31사이 토지이동 및 주택신축등 발생된 개별주택

다. 결정·공시호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82번지의외 146호

라.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가격(토지·건물 일체)

마. 통지방법 : 토지 및 건물소유자 개별통지

2.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011. 9. 30. ~ 11. 1.(30일간)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함. 끝.

정선군고시 제2011-110호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하고,
-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녹색환경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09. 30.

정 선 군 수

가. 지정목적 : 정선읍 북실리 병방치 일원 및 광하리 모평 일원의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군립공원 조성으로 우수한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 111번지 일원

다.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

라.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비치)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공원명	종류	위치	면적(㎡)	근거법령	지정연월일	공원관리청	구역내주요자원	비고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공원 (군립공원)	정선군 정선읍 복실리 산111번지 일원	488,051	자연공원법 제4조, 14조	정선군고시 제2011-110호 (2011.09.30)	정선군	별지	

나.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1) 공원구역 경계조서

가) 공원경계 총괄조서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병방산 군립공원	57	488,051	100.0	

나) 소유자별 조서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7	488,051	100.0	
국유지	5	32,820	6.7	
공유지	17	336,504	69.0	
사유지	35	118,727	24.3	
기타	-	-	-	

다) 지목별 조서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7	488,051	100.0	
전	31	55,715	11.4	
임	21	418,165	85.7	
도	4	13,197	2.7	
공	1	974	0.2	

## 2)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88,051	100.0	
공 원 자 연 보 존 지 구	125,000	25.6	
공 원 자 연 환 경 지 구	276,606	56.7	
공 원 집 단 시 설 지 구	86,445	17.7	

## 3) 집단시설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총괄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86,445	100.0	
공 공 시 설 지	3,321	3.8	
숙 박 시 설 지	15,600	18.1	
녹 지	51,297	59.3	
기 타 시 설 지	16,227	18.8	

## 나) 광하리 지구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1,849	100.0	
공 공 시 설 지	1,560	3.7	
숙 박 시 설 지	15,600	37.3	
녹 지	23,047	55.1	
기 타 시 설 지	1,642	3.9	

## 다) 북실리 지구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4,596	100.0	
공 공 시 설 지	1,761	4.0	
녹 지	28,250	63.3	
기 타 시 설 지	14,585	32.7	

4) 용도지구별 세부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면적(m <sup>2</sup> )	비율(%)	비고
합계	-	488,051	-	
공원자연보존지구	소 계	125,000	100	
	공공시설	-	-	
	교통/운송시설	1,523	1.2	도로, 보행로
	휴양/편익시설	-	-	
	숙박시설	-	-	
	녹지 및 기타	123,477	98.8	
공원자연환경지구	소 계	276,606	100	
	공공시설	-	-	
	교통/운송시설	14,430	5.2	도로, 보행로, 주차장
	휴양/편익시설	596	0.2	휴게소
	숙박시설	-	-	
	녹지 및 기타	261,580	94.6	
공원집단시설지구	소 계	86,445	-	
	광하리지구	41,849	100	
	공공시설	124	0.3	근돌라 매표소
	교통/운송시설	3,078	7.3	
	휴양/편익시설	-	-	
	숙박시설	15,600	37.3	친환경숙박시설 1동 43세대
	녹지 및 기타	23,047	55.1	
	북실리지구	44,596	100	
	공공시설	213	0.5	스카이워크 매표소(기시설) 추후 민자사업유치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도입)
	교통/운송시설	6,967	15.6	도로, 주차장(기시설)
	휴양/편익시설	9,166	20.6	짚와이어, 스카이워크(기시설), 공중화장실(기시설)
	숙박시설	-	-	
	녹지 및 기타	28,250	63.3	

## 2.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가. 공원계획 총괄도

구분	시설명	규모	부지면적(㎡)	비고
계	-	-	488,051	
공공 시설	매표소	3개소	337	
교통 및 운송시설	도로(탐방로포함)	-	15,179	폭:3~6m
	주차장	3개소	8,132	
	승강장	2개소	2,687	
휴양 및 편익시설	짚와이어	-	8,529	
	휴게소	-	596	
	스카이워크	-	340	기시설
	공중화장실	2동	297	
숙박시설	친환경숙박시설	1동	15,600	
녹지 및 기타	녹 지	-	436,354	

나. 건축 및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비고
계	-	-	488,051	-	-	-	-	
공공시설	소 계	-	337	-	-	-	-	
	매표소1(곤돌라)	1층 1동	137	40.00	40.00	29.20	29.20	
	매표소2(곤돌라)	1층 1동	124	40.00	40.00	32.30	32.30	
	매표소3(스카이워크)	1층 1동	76	13.00	13.00	17.10	17.10	기시설
교통및운송시설	소 계	-	25,998	-	-	-	-	
	도로(탐방로포함)	-	15,179	-	-	-	-	폭:1.5 ~ 6m
	주차장1	-	5,008	-	-	-	-	
	주차장2	-	1,367	-	-	-	-	
	주차장3	-	1,757	-	-	-	-	기시설
	승강장1(곤돌라)	-	1,251	-	-	-	-	
	승강장2(곤돌라)	-	1,436	-	-	-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	9,762	-	-	-	-	
	짚와이어	-	8,529	912.00	912.00	10.70	10.70	
	휴게소	-	596	-	-	-	-	
	파고라 3개소	-						
	평의자 9개소	-						
	스카이워크	-	340	-	-	-	-	기시설
	공중화장실1	1층 1동	172	39.00	39.00	22.70	22.70	
공중화장실2	1층 1동	125	19.00	19.00	15.20	15.20	기시설	
숙박시설	소 계	-	15,600	-	-	-	-	
	친환경숙박시설	2층 1동	15,600	2,367.00	3,765.00	15.20	24.10	
녹지및기타	소 계	-	436,354	-	-	-	-	
	녹 지	-	436,354	-	-	-	-	

다 도로조서(전체)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합계					15,179			
소로	3	1	5~6	1,880	10,798	진입로	북측지구계	소 3-2
소로	3	2	4	6.5	26	서비스	주차장	소 3-3
소로	3	3	3.5	210	735	서비스	소 3-2	짚와이어 승강장
소로	3	4	3.5	240	840	서비스	소 3-3	곤돌라 승강장
소로	3	5	1.5	250	375	서비스	소 3-3	곤돌라 승강장
소로	3	6	1.5	80	120	서비스	곤돌라 승강장	소 3-1
소로	3	7	3	670	2,010	서비스	소 3-3	지구계 외곽 등산로
소로	3	8	3~4	10	35	서비스	곤돌라 하차장	모평문화공원
소로	3	9	6	40	240	진입로	모평문화공원	숙박시설

라 도로조서(광하리지구)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합계					275			
소로	3	8	3~4	10	35	서비스	곤돌라 하차장	모평문화공원
소로	3	9	6	40	240	진입로	모평문화공원	숙박시설

마 도로조서(북실리지구)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합계					3,959			
소로	3	1	6	284	1,704	진입로	북측지구계	소 3-2
소로	3	2	4	6.5	26	서비스	주차장	소 3-3
소로	3	3	3.5	210	735	서비스	소 3-2	짚와이어 승강장
소로	3	4	3.5	240	840	서비스	소 3-3	곤돌라 승강장
소로	3	5	1.5	250	375	서비스	소 3-3	곤돌라 승강장
소로	3	6	1.5	80	120	서비스	곤돌라 승강장	소 3-1
소로	3	7	3	53	159	서비스	소 3-3	지구계 외곽 등산로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가. 공원구역 인근 분포도

구분	명칭	소재지	용도지구	수량 및 규모	관리방침	비고	
식물	특정종	털댕강나무	광하리 산1임 일대	보존	1개소	관리요원	특정식물종 IV등급
		동강활미꽃	광하리 산1-1임 일대	보존	2개소	관리요원	특정식물종 V등급
		• 회양목군락 • 굴참나무-회양목군락	광하리 산1임 일대	보존	5개소	관리요원	석회암지 특이식생
동·서·남·북 자연자원	천연기념물	수달	광하리 산251천 일대	보존	-	관리요원	330호
	멸종위기종	삼	광하리 산1일 일대	보존	-	관리요원	I 급
		삼	광하리 산1일 일대	보존	-	관리요원	II 급
조류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복실리 산200임 일대	보존	-	관리요원	323호
어류	멸종위기종	가는돌고기	광하리 산251천 일대	보존	-	관리요원	II 급
	천연기념물	어름치	광하리 산251천 일대	보존	-	관리요원	259호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1-536호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행정정보시스템의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수입증지 전자날인으로 인한 수수료 납부, 수입금 정산 등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정선군 전자 수입증지를 행정정보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 등록관리시스템, 지적시스템 등을 총망라하여 이하 "행정정보시스템" 이라 한다)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 개정 (안 제4조의2 )
- 나. 정선군의 전자 수입증지 도안을 정선군 심벌마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5조)
- 다. 종전의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에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을 포함한 수입금의 정산으로 개정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수입증지요금계(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행정정보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적시스템 등을 총망라하여 이하 "행정정보시스템"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 본문중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는"을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은"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제4호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 고유번호"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로,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종전의 제3항)중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로 하고,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 고유번호"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로 한다.

또한,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중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을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과 정선군 심벌마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조제3항중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을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2(수입증지 요금계기등의 사용)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수입증지요금계(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u>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3. (생략) 4.<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 고유번호</u> <u>&lt;신설&gt;</u></p> <p>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u>,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 고유번호</u>, 발행계시일 등 필요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5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①(생략)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로하고 모양은 <u>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u> 한다.</p> <p>제20조(<u>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u>)①(생략) ②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u>계기 및 무인발급기상</u>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4조2(수입증지 요금계기등의 사용)①----- ----- <u>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행정정보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적시스템 등을 총망라하여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한다)</u>-----.</p> <p>② <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u>은 ----- -----.</p> <p>1.~3. (현행과 같음) 4.<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u> ③ <u>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u> ④----- ----- <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u> ----- -----.</p> <p>제5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①(현행과 같음) ② ----- ----- <u>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도안과 정선군 심벌마크</u> ---.</p> <p>제20조(<u>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수입금의 정산</u>) ①(현행과 같음) ② <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u>----- ----- -----. ③ <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u>----- ----- -----<u>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u>----- -----.</p>

## 관계법령 발췌서

## □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의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2(관인인영의 색깔) 관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 제3차 소속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 2001.2.14>

④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1999.9.2, 2001.2.14, 2003.7.14>

⑤ 영 제39조의2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

정선군공고 제2011-538호

###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 1. 조 례 명 :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 2. 입법취지

-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위함

#### 3. 주요내용

- 군민의 생활 녹지공간인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조례에서 관리해야 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공간적 범위와 집중적 관리대상 가로수를 규정함
- 군수는 10년마다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가로수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함
- 가로수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는 “정선군가로수위원회”를 운영 하도록 함
- 가로수의 조성 기준으로 “수종선정, 구비조건, 식재기준, 식재지역, 바퀴·메워심기” 등에 관한 조건을 정함
-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물의 설치, 병충해방제, 외과수술, 가지치기, 지형과 토양보전”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
- 군수 이외의 자 또는 행정기관에서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의 조성, 변경, 폐기 등이 있을 경우 “조성협의, 비용부담,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
- 가로수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주민신고 절차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함

- 효율적인 가로수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유지·관리에 주민참여의 권장 및 주민참여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산림정책과 산림조성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제 출 처

- 주 소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받 는 이 : 정선군청 산림정책과 산림조성팀

- FAX : 033) 560-2019

- 문의사항 : 033) 560-2445~6

**6. 참고사항**

-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1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란 제3조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어진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의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가로수 관리대상 도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는 제외한다)
2.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3. 면도, 리도, 등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4.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로수 관리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가로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가로수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수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가로수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의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제5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는 정선군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산림정책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정선군의회 의원
3.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의 군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가로수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켰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도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4.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해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② 가로수로서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 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 할 것
3. 가지와 잎이 정상적으로 발달 하였을 것
4.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 및 활착에 지장이 없을 것

**제7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구성하고 관리한다.

② 교목의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성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의 지역 여건에 따라 교목과 다층 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 ④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⑤ 인공구조물 또는 지하의 시설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⑥ 군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식재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 1.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 2.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 3.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제9조(식재 제한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도로의 길어깨
  -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 ②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 가. 고사 가로수
-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제11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 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과수술 등)** 병충해·분진·화학약품·물리적 압력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노거수·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 관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2.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송, 통신 시설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3. 가지치기는 조경기사 또는 조경기능사 등을 보유한 조경 전문업체가 하여야 한다.

**제15조(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조성협의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험과 재해로 말미암아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 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상하고 파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20조(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4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가로수관리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 1. 물주기
- 2. 병해충의 발생 신고
-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신고
- 5.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6. 가로수별 관리인 지정

②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별표 7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22조(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가로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7조제1, 4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도로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⑤ 보도폭 1.5m미만 지역	가로수 식재하지 않음	

## [별표 2]

##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7조제6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경 20cm이상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식재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5cm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흉고직경 8cm이상, 근원경 12cm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6cm이상, 근원경 10cm이상	

## [별표 3]

##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1조제1~3항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 식물 등 다 양하게 처 리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 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반원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2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 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있	○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 디프제 살포	○ 1화기: 6월 상순 ○ 2화기: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있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만코지 수화제 살포	○ 1화기: 5월 초중순 ○ 2화기: 9월 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 나무 느티나무	있	○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있	○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 수관살포: 5월 하순 ~6월 초순 ○ 나무주사: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 나무	있	○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하순
응애류	벗 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있 가지	○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 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있 가지	○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벗 나무 소 나무 포플러류 등	있 가지	○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트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 기준(제17조제4항 및 제7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li> <li>○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li> <li>○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li> </ul>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군수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군수가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li> <li>○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li> <li>○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li> <li>○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li> <li>○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li> </ul>	

## [별표 6]

##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19조제2항 관련)

훼손자 부담금	보상금지급액 (원)	비고
10만원 미만	20,000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서 및 관할지구대, 파출소 등의 신고 사항은 보상에서 제외
10만원 ~ 50만원 미만	40,00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000	
100만원 이상	70,000	

## [별표 7]

##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관수차량	군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 리에 참여할 경우 지원기준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병해충 발생신고	방제장비, 약제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및 물품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	
6.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 가로수의 열매 채취가 도로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가로수 유지 관리에 참여 할 경우 부산물인 열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관계법령 발췌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 2. 가로수를 옮겨심기
- 3. 가로수의 제거
-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⑤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08.6.20][[시행일 22008.6.2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② 삭제 <2008.6.20>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08.6.20]

가로수조성·관리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기본방향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 나.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 제공한다.
- 다. 국토 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삭제 <2008.6.20>

나. 바뀌심기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절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다. 메워심기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 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라.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 (이하 "지주대"라 한다)

마. 가로수 보호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바. 가로수 보호덮개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이라 한다)의 시설물

사. 가로수 보호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3.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수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 (2) 발육이 양호할 것
-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 (6) 재배수가 (1) 내지 (4)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4. 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식재 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 가.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 나.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 다.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6. 식재 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도로의 길어깨
  -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 7.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뀌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 8.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병해충 방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10.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1.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2.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3. 점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점검시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관리 협의 및 재정

가.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간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6.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가로수 조성실적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